발송번호: 9-5-2020-013856731
발송일자: 2020.02.24.

수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14, 매강빌딩4층 에이치앤에이치 H&H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초동)
김인철 귀하(귀중)

06656

YOUR INVENTION PARTNER

특 허 청

특허결정서

출원인	성명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특허고객번호: 220050095099)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신촌동, 연세대학교)
대리인	성명	김인철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14, 매강빌딩4층 에이치앤에이치 H&H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초동)
발명자	성명	홍태훈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제1공학관 A409
발명자	성명	정광복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제1공학관 A473
발명자	성명	구충완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제1공학관 A473
발명자	성명	김지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제1공학관 A472
발명자	성명	이민현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제1공학관 A472
발명자	성명	오정윤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제1공학관 A472
발명자	성명	강현아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제1공학관 A472

출원번호	10-2018-0070236
발명의 명칭	유전자 발현 프로그래밍과 메타휴리스틱 알고리즘을 활용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예측 시스템 및 예측 방법
청구항수	14

이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제66조에 따라 특허결정합니다.
(특허권은 특허료를 납부하여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음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 끝.

[참고문헌]

1. KR1020160072861 A
2. KR1020140133032 A
3. JP2014203228 A

2020.02.24.

특허청 융복합기술심사국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심사관 박승철 박 승 철

<< 안내 >>

【 등록료 납부, 전자등록증 발급 서비스 개시, 특허기술상신청 안내 및 등록공보 확인 등 】

1. 등록료 납부안내
   - o 특허료 납부예정금액(1~3년차분) : 591,000 원(1-3년차분을 정상납부기간내에 납부하는 경우), 295,500 원(50% 감면대상자인 경우), 177,300 원(70% 감면대상자인 경우)
   - o 특허료의 정상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추가납부하거나, 특허료납부기간 중 특허료의 변경요인이 있을 때에는 위 납부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o 자세한 안내는 아래의 첨부파일(특허료 납부 안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출원인은 이 특허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다만,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에 분할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3. 2018. 7. 1. 설정 등록부터 전자등록증 발급이 시행되었습니다. 특허로(http://www.patent.go.kr)에서 「전자등록증 신청」을 사전에 하거나, 납부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서식 제25호)에 등록증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 수령으로 선택하면 「전자등록증 수신함」을 통해 전자등록증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자등록증을 사전에 신청하지 않고 동봉된 납입고지서로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서면 등록증으로 발급됩니다.
4. 내국인은 매년 2월, 8월경 특허기술상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jsp/kiponet/mp/patentprize/index.htm)에 공지된 신청기간에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발명(고안)에 대해 특허기술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o 신청기준일(상반기의 경우 매년 2월 1일, 하반기의 경우 매년 8월 1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정등록된 발명(고안)
   - o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이 필요한 발명으로서 신청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품을 출시하여 매출이 발생한 발명
5. 출원인은 설정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만, '12.3.15. 이후의 출원이고,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특허출원일로부터 4년과 출원심사 청구일로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된 경우에 한 함)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 등록공보는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신 후 7일 전후로 특허청 홈페이지(특허마당→인터넷공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관의 직권 보정사항이 있으면 평균 등록일로부터 약 30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허로」고객센터에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담당 심사관 지정 알림, 마감기한 알림 등 각종 민원처리 사항을 이메일과 휴대폰(SMS)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해 무료 온라인 교육서비스(www.ipacademy.net)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이 통지서의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특허청 ☎ 042-481-5696(담당심사관 박승철)로, 서식 또는 절차에 대하여는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청 및 특허청 직원은 법령에서 정한 법정 수수료 외에 출원인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일체의 금품·향응 및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나 사례를 인지 또는 목격하였을 경우, 특허청 홈페이지(https://www.kipo.go.kr) 공직비리신고센터(특허청-민원/참여-국민신고-공직비리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국민의 소중한 지식재산,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

특허(등록)료 · 수수료 · 등록면허세 · 인지세 납부안내서(영수증)

1. 납부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출원번호, 등록료, 총금액 등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2. 면제 또는 감면대상자, 청구항 축소, 상품류 축소 등에 따라 정상 특허(등록)료에 변동이 있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특허청에 확인하신 후에 특허(등록)료를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3. 요금의 종류
   가. 특허료·등록료
   나. 수수료: ①출원료 ②심사청구료 ③심판청구료 ④국제출원수수료 ⑤보정료 ⑥특허권 등의 권리이전 등록료 ⑦그 밖의 수수료
   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특허권 등의 권리이전 및 상표권의 설정 및 갱신 등록에 한함·상표권 설정 9,120원(등록면허세: 7,600원, 지방교육세: 1,520원), 상속에 의한 권리이전 14,400원(등록면허세: 12,000원, 지방교육세: 2,400원),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 21,600원(등록면허세: 18,000원, 지방교육세: 3,600원)]
   라. 인지세: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액
4. 이 고지서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특허청 본청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요금은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그 밖의 문의사항은 특허청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 - 80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제 또는 감면은 발명자와 출원인, 등록권리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납부금액이 '₩0원'인 경우에는 은행에 제출하지 마시고, 반드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On-Line(특허로)이나 서면(우편, 직접방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본 설정등록료는 고객님의 입금전용계좌를 통해 CD기/ATM기 또는 온라인으로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전용계좌: 농협은행 790-0594-2325-793 (아래 고지 금액에 한하여 입금 가능하며, 타행 이체 시 송금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납부자용)

세입징수관서	특 허 청
계 좌 번 호	1 2 7 9 9 6 - 6
납 부 자 번 호	0131-9-5-2020-0138567-31
출원 · 등록 · 심판 번 호	10-2018-0070236
특허(등록)료 및 수수료	₩295,500원
등록 면허세	₩0원
지방 교육세	₩0원
인 지 세	₩0원
총 금 액	₩295,500원
정상납부기일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

* 금액기재 앞 란에 ₩ 표기 후 금액을 기재함.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전자등록증 수령을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총금액에서 ₩10,000원 감면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한국은행취급점 영 수 인

납부자 성명	김인철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14, 매강빌딩4층 에이치앤에이치 H&H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초동)

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면 제/감 면 사 유
전담조직

특허청

징수결정전 납입 납부서 (수납은행용 또는 한국은행용)

세입징수관서	특 허 청
계 좌 번 호	1 2 7 9 9 6 - 6
납 부 자 번 호	0131-9-5-2020-0138567-31
출원 · 등록 · 심판 번 호	10-2018-0070236
특허(등록)료 및 수수료	₩295,500원
등록 면허세	₩0원
지방 교육세	₩0원
인 지 세	₩0원
총 금 액	₩295,500원
정상납부기일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

* 금액기재 앞 란에 ₩ 표기 후 금액을 기재함.
*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전자등록증 수령을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총금액에서 ₩10,000원 감면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수납 의뢰하오니 영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취급점

<<특허(등록)료 납부 안내>>

1. 설정등록료(1~3년차분) 및 연차등록료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정상납부기한이 2009. 1. 1. 이후인 경우]

권리구분			설정등록료 (1~3년차)	연차등록료					
				4~6년차	7~9년차	10~12년차	13~15년차	16~20년차	21~25년차
특허		기본료	15,000원씩 45,000원/년	40,000원/년	100,000원/년	240,000원/년	매년 360,000원		
		가산료(청구범위 1항마다)	13,000원씩 39,000원/년	22,000원/년	38,000원/년	55,000원/년	매년 55,000원		
실용신안		기본료	12,000원씩 36,000원/년	25,000원/년	60,000원/년	160,000원/년	240,000원/년		
		가산료(청구범위 1항마다)	4,000원씩 12,000원/년	9,000원/년	14,000원/년	20,000원/년	20,000원/년		
디자인	심사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씩 75,000원		35,000원/년	70,000원/년	140,000원/년	210,000원/년		
	일부심사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씩 75,000원		34,000원/년 (4~20년차)					

※ 정상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등록료를 3년분 이상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총납부금액의 5% 할인

2. 납부기간 : 최초 3년분의 설정등록료는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4년분 이후의 연차등록료는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매년 당해연도 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예:설정등록일이 2014.2.4.인 경우 2017.2.4.까지 4년차 등록료를 납부) 그리고 정상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개월 이내(추가납부기간)에 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매월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설정등록료에 대한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하면 출원포기로 간주되어 등록받을 수 없으며, 연차등록료에 대한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권리는 소멸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납부방법
①「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을 이용하는 방법 : 등록결정서와 함께 송달받은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상의 정상납부일까지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 또는 인터넷 지로사이트(http://giro.or.kr)에서 등록료를 납부합니다.(납부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②「납부서」(특허권등의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를 이용하는 방법 :
㉮「납부서」를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 특허청(서울사무소 등)에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한 후 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제출일의 다음날까지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 또는 인터넷지로사이트(http://giro.or.kr)에서 특허료를 납부합니다.(단, 금융기관영업시간 이후에 납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납부)
㉯「납부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 「납부서」를 작성한 후 등록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상환증서로 바꾸어 「납부서」와 함께 특허청에 보내야 합니다.
* 보낼 곳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등록과

4. 등록료 면제 및 일부청구항(일부디자인)을 포기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학생, 중소기업 등이 등록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서」와 함께 감면 또는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후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설정등록료 납부시 일부 청구항(일부디자인)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서」와 함께 「포기서」(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를 제출한 후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6.9.1>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앞쪽)

납 부 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납부구분】 □설정 등록료 □연차 등록료
□존속기간갱신등록료 2회차 납부
□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 추가 등록료 □등록료 보전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지분】)(기재요령 제2호 참조)

【납부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대리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위신청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대위원인】)

【납부대상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번호, 등록번호)】
【청구항(디자인, 상품류, 서비스류)수】
(【디자인의 일련번호】)
(【포기대상】)
(【납부연차(납부회차)】)
(【감면사유】)

(【특약】)

【특허(등록)료】
【특허(등록)료】
(【등록세】)
【합계】

【수수료자동납부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

(【회복신청】
【회복신청 원인】 □ 특허발명(등록고안, 등록디자인)의 특허(등록)권 회복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멸된 특허(등록)출원 및 특허(등록)권 회복

(【특허(등록)증 수령방법】 □ 방문수령(대전) □ 방문수령(서울) □ 우편수령
□ 방문수령(대전 송달함) □ 방문수령(서울 송달함)

(【특허(등록)증 수령인】)
(【성명】)
(【주소 및 우편번호】)

【특허(등록)료·수수료 및 등록세 납부사항정정신청】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납부자 (서명 또는 인)
(대위신청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출원, 등록단계에서 이미 제출한 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서류의 활용 또는 기재요령 제13호 참조)
(【서류명】)
(【특허(등록)번호(출원번호)】)